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5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장철민 · 박용갑 · 문금주
김한규 · 허 영 · 이기현
박 정 · 채현일 · 이용우
김영환 · 정준호 · 맹성규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첨단기술 등 국가의 중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특구제도에 포섭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시스템이 미흡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글로벌 진출 및 국제협력, 신기술 실증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연구

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특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을 지정 전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6항 신설).
- 나.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지원 및 국제협력·해외시장진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특구개발계획에는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 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연구소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 미달 시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4).
- 마. 국가 및 지자체의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서비스 및 해외진출 지원 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 바. 특구 내 실증이 곤란한 경우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단서 신설).
- 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아. 입주기관 편의 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 계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구관리계획에 입주대상업종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 및 결산보고 기한 조정,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특구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함(안 제34조, 제37조, 제48조 및 제61조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을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으로 한다.

1의2. “특구개발사업”이란 특구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특구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연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특구의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의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

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 중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시·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절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조의2제4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구개발사업의 내용

8.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제9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년의”를 “10년의”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2. 테스트베드 제공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특구 내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테스트베드를 특구 내 입주기업체·입zug기관에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절차,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연구개발서비스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의4(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구 내에서 실증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의 특구 외의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30조의2의 제목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그 밖에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3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입주계약을”을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로 한다.

다만, 입주기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입주변경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제37조를”을 “제37조제2항을”로, “입주계약 사

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입주변경계약”로 한다.

제44조 중 “제77조 및 제78조에도”를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을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및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입주에 관한 업무

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61조 중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진흥재단에”를 “진흥재단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로 한다.

제73조제2호 중 “제72조의제2항에”를 “제72조제2항에”로, “진흥재단”을 “진흥재단 또는 관계 기관·단체”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특구개발사업”이란 특구</u> <u>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u> <u>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u> <u>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u> <u>업을 말한다.</u> <u>가. 특구의 핵심 기능을 수행</u> <u>하기 위한 교육·연구 및</u> <u>사업화 시설 구역 등의 용</u> <u>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u> <u>나. 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연</u> <u>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u> <u>을 위한 주거·문화·의료</u> <u>· 복지시설 등의 용지조성</u> <u>사업 및 건축사업</u> <u>다. 특구의 기능 활성화를 지</u> <u>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u> <u>기·통신·가스·용수 등</u> <u>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u> <u>·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u> <u>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u>

2. (생 략) <u><신 설></u>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u>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u>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 14. (생 략)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u> 2. (현행과 같음) 2의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 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 ----- -----. 4.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 ⑤
(생략)

<신설>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시·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절차는 제외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조의2제4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생략)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 6. (생략)

<신설>

7. ~ 15. (생략)

③ ~ ⑤ (생략)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생략)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 7. (생략)

<신설>

8. ~ 16. (생략)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6의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 1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특구개발사업의 내용

5. ~ 7. (현행과 같음)

8.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9. ~ 17. (현행 제8호부터 제1

③ ~ ⑧ (생략)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	6호까지와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 ----- ----- -----.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 ----- ----- ----- -----.
--	--

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신설>

-----10년의-----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2. 테스트베드 제공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특구 내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테스트베드를 특구 내 입주기업체·입

<신 설>

<신 설>

주기관에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절차,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연구개발서비스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의4(해외진출 지원) 과학기

<u>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	<u>발사업과의 관계) -----</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u> <u>-----.</u> <u>다만, 해당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경제자유구역</u>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혁신도시</u>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산업단지</u> 4. 그 밖에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④·⑤ (생략)

제37조(입주계약)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주계약) ① -----

-----.

<후단 삭제> 다만, 입주기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입주변경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②·③ (생략)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

-.
-.
-.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2항을-----
-----입주변경계약을-----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도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u>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바. (생략) <u><신설></u> 사. ~ 자. (생략)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마. (생략) <u><신설></u> <u><신설></u> 바. ~ 아. (생략) 3. ~ 5. (생략) ② (생략)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 ---- <u>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및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u> -----. 제48조(사업) ① ----- -----. 1.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 기업의 입주에 관한 업무</u> <u>아. ~ 차. (현행 사무부터 자목까지와 같음)</u> 2.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u> <u>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u> <u>아. ~ 차. (현행 바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결산보고) -----
--	---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u>다음 연도 2월 말까지</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진흥재단에</u> 위탁할 수 있다. 제7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략) 2. <u>제72조의제2항에</u>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u>진흥재단의 직원</u> 3. 4. (생략)	----- ----- -----<u>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u>----- -----.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진흥재단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u>-----. 제7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72조제2항에</u>----- -----<u>진흥재단 또는 관계 기관·단체</u>----- 3. 4. (현행과 같음)
---	---